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Ⅳ

[다문화·한부모가족]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Ⅳ

【 다문화 · 한부모가족 】

2018.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8. 10. 2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와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선·발전되어 왔는데,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경제·사회구조 등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질환에 의한 후천적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 구성원들과 이들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층별로 차별화된 복지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층별로 특화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들을 지원 대상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한부모가족, 농업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평가한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제1권은 총괄편으로 보고서 주제선정 배경, 정책환경 및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 현황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제2권은 저소득층, 제3권은 장애인, 제4권은 다문화·한부모가족, 제5권은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사업들의 그 간 성과를 분석·점검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별 사회보장사업들이 사업 취지에 맞게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기획보고서가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차 례

CONTENTS

Ⅰ. 개 요 / 1

1. 분석 배경 및 목적 ····· 1
2. 사업 및 예산현황 ····· 4
3. 해외사례 ····· 11

[다문화가족] ····· 11

가. 미국 ····· 11
나. 캐나다 ····· 14
다. 일본 ····· 16
라. 시사점 ····· 18

[한부모 가족] ····· 19

가. 미국 ····· 19
나. 영국 ····· 21
다. 시사점 ····· 23

Ⅱ. 정책과제별 분석 / 24

1. 정착지원 부문(다문화가족) ····· 24

가. 현황 ····· 24

(1) 사업 현황 ····· 24

(2) 예산 현황 ····· 27

나. 분석 의견 ····· 29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공급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9

(2) 다문화 멘토링 서비스 형평성 제고 필요 ····· 33

(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법적 근거 명확화 ····· 36

2. 보육지원 부문(한부모가족) ····· 39

가. 현황 ····· 39

(1) 사업 현황 ····· 39

(2) 예산 현황 ····· 42

나. 분석 의견 ····· 43

(1)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의 정확도 제고 ····· 43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사업의 운영 개선 필요 ····· 46

3. 편의지원 부문(한부모가족) ····· 51

가. 현황 ····· 51

(1) 사업 현황 ····· 51

(2) 예산 현황 ····· 52

나. 분석 의견 ····· 53

Ⅰ 개 요

1 분석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다문화가구는 2015년 29만9천 가구에서 2017년 31만9천 가구로 증가하였고, 2017년 기준 전체인구의 1.62%로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가구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한부모가구 수는 212만7천 가구이며,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9%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 %)

연도	전체 가구수	다문화 가구수	비율	한부모 가구수	비율
2015	19,013	299	1.57	2,052	10.8
2016	19,285	316	1.63	2,090	10.8
2017	19,574	319	1.62	2,127	10.9

주: 다문화가구수는 인구총조사(통계청) 각년도를 사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5~2045」, 2017. 및 「인구총조사」각년도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 소득은 5,010만원인 데 반해 다문화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4,700만원이며, 한부모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20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특성별 연평균 가구소득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4,233	4,479	4,658	4,770	4,882	5,010
다문화가구	3,185	3,276	3,668	3,881	4,293	4,700
한부모가구	2,813	2,776	2,830	3,008	3,064	3,208

주: 경상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각 연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를 공헌하고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설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다문화가족[1)]에 대한 지원은 2000년대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 형성이 증가하면서 정책지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국제결혼이나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체류외국인이 증가하자 국민과 이민자의 공존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2007년에 제정하였다. 그 후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동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에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13년에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8년에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현재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가족[2)]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2007년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동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혼인 관계없이 출산한 경우, 또는 시대적·사회적 환경변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부모가 손자를 돌봐야 하는 조손가족 등은 양부모가족과는 다른 특징적인 문제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다문화가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2) 한부모가족은 부나 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 형태를 의미한다.

[다문화·한부모가족 사회보장 관련 정부 기본계획]

기본 계획	근거법	정책과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4-2018)	「사회보장 기본법」	1. 다문화 가족의 적응 지원 2. 한부모 가정 양육 지원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2010-2012)	「다문화가족 기본법」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2.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3.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2013-2017)	「다문화가족 기본법」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4.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6.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2018-2022)	「다문화가족 기본법」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6-2020)	「건강가정 기본법」	〈한부모가족 지원〉 1. 청소년 한부모 맞춤형 패키지 지원 2.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3.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1.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서비스 지원 2.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강화 3. 다문화가족 안전망 강화 4. 다문화사회 수용성 제고

자료: 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다문화·한부모가족이 늘어나면서 다문화·한부모 가족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국가의 정책 과제의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제도에 대한 접근성 문제 및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정책적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문화·한부모가족 대상 사회보장사업을 진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방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문화·한부모가족 사회보장사업을 크게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착지원과 한부모가족의 보육지원, 편의지원으로 나누어,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사업 및 예산현황

다문화·한부모가족 대상 사회보장사업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등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양육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문화·한부모가족 대상 사회보장사업은 2019년 예산안 기준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2개 부처의 10개 사업이다.

먼저 다문화가족 대상 사회보장사업은 주로 정착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다문화 멘토링 지원 사업[3]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센터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자조집단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은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도사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은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이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방법을 제공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다문화 멘토링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강화 및 기초학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1:1로 멘토링하는 사업이다.

한부모가족 대상 사회보장사업은 보육지원 부문과 편의 지원 부문으로 구성되며, 사업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사업[4],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

3)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중 탈북학생을 제외하였다. 다만,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에게 지원되는 재원의 분리가 불가능하나 탈북학생의 비중이 미미하여 통합된 재원을 사용하였다.

4)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사업'과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사회보장사업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의 예산에 중복 계상되어 있어 사업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한부모가족 사회보장사업 구성]

분야	부처	재정사업	재원
정착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센터 운영)	양성평등기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교육부	다문화 멘토링 지원 사업	일반회계
보육지원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양성평등기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사업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	
편의 지원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일반회계

주: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사업'은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이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센터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임. 다문화 멘토링 지원사업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임

자료: 기획재정부 사회보장사업목록

2019년도 다문화·한부모가족 사회보장사업 예산안은 2,865억원으로 전년도 1,592억원 대비 1,272억원(79.9%)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 부문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은 734억원으로 전년도 635억원 대비 98억원 증가하였고, 보육지원 부문은 2019년도 예산안은 2,092억원으로 전년도 919억원 대비 1,173억원 증가하였다. 편의지원 부문은 2019년도 예산안은 39억원으로 전년도 38억원 대비 1억원 증가하였다.

[2019년도 다문화·한부모가족 사회보장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예산	추경(A)		(B-A)	(B-A)/A
다문화·한부모가족 사회보장사업 합계	**152,859**	**159,239**	**159,239**	**286,470**	**127,231**	**79.9**
정착지원 부문 소계	**59,809**	**63,532**	**63,532**	**73,352**	**9,820**	**15.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센터 운영)	28,179	30,142	30,142	38,379	8,237	27.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15,667	16,480	16,480	16,777	297	1.8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	4,069	4,246	4,246	4,748	502	11.8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5,855	5,914	5,914	6,698	784	13.3
-다문화 멘토링 지원 사업	6,039	6,750	6,750	6,750	0	0
보육지원 부문 소계	**89,075**	**91,923**	**91,923**	**209,232**	**117,309**	**127.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87,058	89,393	89,393	204,558	115,165	128.8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	2,017	2,530	2,530	4,674	2,144	84.7
편의지원 부문 소계	**3,975**	**3,784**	**3,784**	**3,886**	**102**	**2.7**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3,975	3,784	3,784	3,886	102	2.7

자료: 여성가족부, 교육부

최근 5년간 다문화·한부모가족 사회보장사업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378억원에서 2019년 2,865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다문화·한부모 사회보장사업 예산의 연평균증가율은 20.1%이고, 보육지원 부문의 예산증가율이 29.3%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 19.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센터 운영)이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예산	2016 예산	2017 예산	2018 예산	2019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다문화·한부모가족 사회보장사업 합계	**137,874**	**132,642**	**153,645**	**159,239**	**286,470**	**20.1**
정착지원 부문 소계	**58,585**	**59,368**	**60,595**	**63,532**	**73,352**	**5.8**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센터 운영)	26,763	27,450	28,226	30,142	38,379	9.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16,104	16,104	16,104	16,480	16,777	1.0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	3,185	3,281	3,732	4,246	4,748	7.5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5,783	5,783	5,783	5,914	6,698	3.7
-다문화 멘토링 지원 사업	6,750	6,750	6,750	6,750	6,750	0
보육지원 부문 소계	**74,745**	**68,930**	**89,075**	**91,923**	**209,232**	**29.3**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72,442	66,960	87,058	89,393	204,558	29.6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	2,303	1,970	2,017	2,530	4,674	19.4
편의지원 부문 소계	**4,544**	**4,344**	**3,975**	**3,784**	**3,886**	**△3.8**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4,544	4,344	3,975	3,784	3,886	△3.8

주: 2015~2018년은 추경예산 기준이며, 2019년은 예산안 기준임
자료: 여성가족부, 교육부

부처별로 보면 여성가족부의 사회보장사업 예산은 2015년 1,311억원에서 2019년 2,797억원(연평균 증가율 20.9%)으로 증가하였고, 교육부는 67.5억원으로 2015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5)]

5)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18.4.)」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사업)를 신설·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재정사업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2018년 3월 기준 사회보장사업목록(323개 사업)을 기준으로 다문화·한부모 가족 대상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 2019년 신규 사업 등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작성하였다. 다만, 다문화·한부모 가족은 저소득층 대상 사업 등 타 사회보장사업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다문화·한부모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분석하였다. 사업목록에는 보건복지부의 '다문화보육료지원사업'과 교육부의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업은 무상보육지원에 포함되어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사업이라 볼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문화·한부모가족 사회보장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부처	2015 예산	2016 예산	2017 예산	2018 예산	2019 예산(안)	비중	연평균 증가율
합계	137,874	132,642	153,645	159,239	286,470	100.0	20.1
여성가족부	131,124	125,892	146,895	152,489	279,720	97.6	20.9
교육부	6,750	6,750	6,750	6,750	6,750	2.4	0

주: 2015~2018년은 추경예산 기준이며, 2019년은 예산안 기준임
자료: 여성가족부, 교육부

부문별로 분류해 보면, 2019년 예산안 기준 보육지원 부문의 비중이 73.0%로 정착지원의 비율 25.6%보다 47.4%p 높게 나타났다. 정착지원 부문은 2015년 586억원에서 2018년 63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예산안은 734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보육지원 부문은 2015년 747억에서 2018년 91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예산안에서는 2,09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편의지원 부문은 2015년 45억원에서 2018년 38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 예산안에는 39억원으로 증액되었다.

[다문화·한부모가족 사회보장사업 부문별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예산	2016 예산	2017 예산	2018 예산	2019 예산(안)	비중	연평균 증가율
합계	137,874	132,642	153,645	159,239	286,470	100.0	20.1
정착지원	58,585	59,368	60,595	63,532	73,352	25.6	5.8
보육지원	74,745	68,930	89,075	91,923	209,232	73.0	29.3
편의지원	4,544	4,344	3,975	3,784	3,886	1.4	△3.8

주: 2015~2018년은 추경예산 기준이며, 2019년은 예산안 기준임
자료: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출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의무지출의 비중이 2019년 예산안 기준 71.4%로 재량지출 28.6%보다 42.8%p 가량 높으며, 연도별 의무지출의 비중은 2015년 52.6%에서 2016년 50.5%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7년 56.7%로 상승한 후 2019년 예산안에서는 71.4%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한부모가족 대상 사회보장사업 의무지출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예산	2016 예산	2017 예산	2018 예산	2019 예산(안)	비율	연평균 증가율
계(A+B)	137,874	132,642	153,645	159,239	286,470	100	20.1
의무지출(A)	72,442	66,960	87,058	89,393	204,558	71.4	29.6
재량지출(B)	65,432	65,682	66,587	69,846	81,912	28.6	5.8
의무지출 비중 (A/A+B)	52.6	50.5	56.7	56.1	71.4	-	-

주: 2015~2018년은 추경예산 기준이며, 2019년은 예산안 기준임

자료: 여성가족부

회계별로는 다문화·한부모가족 대상 사회보장사업은 주로 양성평등기금인 기금 지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1,266억원에서 2019년 2,75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5년 113억원에서 2019년 10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다문화·한부모가족 대상 사회보장사업 회계/기금별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예산	2016 예산	2017 예산	2018 예산	2019 예산(안)	비율	연평균 증가율
합계	137,874	132,642	153,645	159,239	286,470	100	20.1
일반회계	11,294	11,094	10,725	10,534	10,636	2.4	△1.5
기금	126,580	121,548	142,920	148,705	275,834	97.6	21.5

주: 2015~2018년은 예산 기준이며, 2019년은 예산안 기준임

자료: 여성가족부

다문화·한부모가족에 대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상 재정투입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출은 연평균 20.1%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서 2022년 기간에는 연평균 16.8%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 기간의 재정투입 연평균 증가율은 11.5%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의무지출은 1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15-19	18-22	15-22
합계	137,874	132,642	153,645	159,239	286,470	286,176	291,354	296,256	20.1	16.8	11.5
여성가족부	131,124	125,892	146,895	152,489	279,720	279,426	284,604	289,506	20.9	17.4	12.0
교육부	6,750	6,750	6,750	6,750	6,750	6,750	6,750	6,750	0	0	0
의무지출	72,442	66,960	87,058	89,393	204,558	204,558	204,558	204,558	29.6	23.0	16.0
재량지출	65,432	65,682	66,587	69,846	81,912	81,618	86,796	91,698	5.8	7.1	4.9

3 해외사례

[다문화가족]

가. 미국

미국은 대표적인 이주국가이고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을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공식적 정책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입국 당시 언어능력을 측정하지도 않으며, 입국 후의 모든 과정은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다만, 다양한 교육기관과 NGO들이 이민자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분배하는 정도이다.

미국 이주민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회통합의 관건이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조직들 간의 역할 분담과 협업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정책 입안과 추진에서 리더십을 가지되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민간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미국이 연방제 국가라는 점과 지역별 이주민의 출신지 분포나 문화적 특성 등이 모두 다른 데서도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미국사회에서 이민자 대상의 일목요연한 통합정책은 없지만, 이들의 통합에 영향을 주는 다문화 맥락에서의 정책은 상당히 많다.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반(反)차별, 다양성의 존중, 소통과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이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이주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

6) 이민경 외, “이주 가정 자녀 정책 해외 사례: 방향성과 실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3권제1호, 2013. pp.144~147. 참조.

(1) 교육 지원

먼저 '이주아동(Migratory Children)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이주가정 자녀들의 학업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이주자 교육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다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공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지원은 유아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해당된다. 또한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교육은 이주가정의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이주가정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아교육, 부모교육 등의 가족문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예로 이주자 대학지원 프로그램(College Assistance Migrant Program, CAMP)은 이주민 및 계절 농장노동자들과 자녀들에게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고등학교 자격 프로그램(High School Equivalency Program, HEP)은 이주민 및 계절 농장노동자들의 16세 이상의 자녀에게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이나 직장, 군대, 대학 등의 진출을 지원한다. 이주자 교육 프로그램 컨소시움 장려 보조금(Migrant Education Program Consortium Incentive Grants)은 교육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에게 컨소시움을 형성한 주 교육기관에게 제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주아동(Migratory Children) 교육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과 세부내용
이주자 대학지원 프로그램 (College Assistance Migrant Program, CAMP)	이주민/계절 농장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대학에서의 첫 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
고등학교 자격 프로그램 (High School Equivalency Program, HEP)	이주/계절 농장노동자들과 그 자녀들 중 16세 이상인 사람들을 상대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이나 해당 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 군대, 대학 등의 진출을 지원
이주자 교육 프로그램 컨소시엄 장려 보조금 (Migrant Education Program Consortium Incentive Grants)	교육부 장관은 매년 3백만 달러를 확보하여 교육단절을 경험한 이주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주나 적절한 기관과 컨소시움을 형성한 주 교육기관(State Educational Agency)에 제공하여야 함. 이 재원은 주 교육기관에 의해 이주아동에게 직접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임.
이주민 교육 조정 지원 센터 (Migrant Education Coordination Support Center)	전국적 규모로 이주자 교육프로그램의 주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실행계획. 계절노동자들이 일을 따라 주를 넘어선 이주를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 간 협력을 도모함.

프로그램명	대상과 세부내용
공정한 출발을 위한 이주자 교육 (Migrant Education Even Start, MEES)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참여하는 이주 가정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하여 진행하는 가족 문해 프로그램. 유아교육, 부모교육, 성인 문해교육, 성인 기본 교육(영어교육 포함) 등을 패키지로 진행. MEES는 '공정한 출발을 위한 가족 문해력 장학금 프로그램(Even Start Family Literacy State Grants program)'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0~3세의 아동을 가진 이주농업 가족이 다수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됨.
이주자 교육 국가 핫라인 (Migrant Education National Hotline, ESCORT)	이주 농장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나라 어느 곳에서든 무료로 전화를 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이주민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이주자 교육 프로그램 (Migrant Education Program, MEP)	MEP는 주 교육기관이 이주아동들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함.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다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무료, 공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자료: 미국 교육부 홈페이지(www.ed.gov)

(2) 언어 지원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 프로그램인 교육부 내의 언어능력 지원 부서(The Office of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Enhanc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Limited English Proficient Students)는 이주가정 자녀들이 영어를 원활히 구사하여 학업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중언어교육 또는 영어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까닭에 언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학업적 성공을 위해 영어를 배우는 동안 자신의 모국어로 기타 과목을 들으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공정한 출발을 위한 이주자 교육(Migrant Education Even Start, MEES)은 이주 가정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하여 진행하는 가족 문해 프로그램이다.

뉴커머 프로그램은 영어 비숙련 이주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학령기에 입국한 이주가정 자녀들이 그 대상이 되며, 신규 이민자가 많이 몰려 있는 도시지역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주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공교육의 이중언어, ESL, 정규과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문해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영어능력과 기초학업능력을 획득하게 하여 미국 정규교육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

는다. 교육기간, 지역의 위치, 가족환경, 활용자원 등에 따라 형식과 내용은 다양하지만 영어 비숙련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을 프로그램 적용 기한으로 설정하여 주류사회에 빠른 편입을 도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3) 정착 지원

보건복지부 내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의 난민정착기구(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ORR)에서는 난민가족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난민학교 영향 프로그램(The Refugee School Impact Program)은 난민학생들이 미국 주류 학생들과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5-18세까지의 난민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재원을 지원한다. 또한 무연고 아동 서비스는 무연고 외국인 아동을 이들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시설에 배치하고 돌보며, 무연고 아동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가나 기관에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이지만, 미국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민자 정착, 통합 정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시민권과 이민부 차원에서 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와 관련 단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서비스 내용과 질을 평가하여 발표한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는 각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지역 공동체, 교육기관, 이민자 서비스 단체 등에서 담당한다.

이처럼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 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골격을 만들고 자원을 마련하여 지자체나 지역 관련 기관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1) 언어 지원

이민자 언어교육(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Program, LINC Program)은 1992년부터 이민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언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이민자 정착, 통합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비중이 높은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민자들이 캐나다 공용어인 영어나 불어를 빨리 익혀 조속히 캐나다의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재원을 대고 주정부나 교육기관 등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 신청자격은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인정하는 학령기를 넘어선 성인(온타리오 주의 경우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나 난민, 영주권 심사 중인 사람, 또는 시민권과 이민부에서 발행하는 이 프로그램 신청자격 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2) 정착 지원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ISAP)은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재원을 제공하여 이민자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리셉션, 오리엔테이션, 통번역, 지역자원에의 연계, 해결중심의 카운슬링, 생활정보와 취업정보 제공 등 직접적 서비스와 함께, 워크숍, 리서치 프로젝트, 스텝 교육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접적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호스트 프로그램(HOST)은 캐나다 문화에 익숙한 자원봉사자가 신규 이민자에게 도우미 역할을 하여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취업을 위한 인맥형성이나 지역사회공동체에의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연방국가인만큼 구체적인 이주 아동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은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브리티쉬 콜럼비아주의 교육부는 학교에 신규이주 아동을 체계적으로 돕는 SWIS(Settlement Worker in Schools)라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및 세부내용
신규 이민자 언어교육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Program: LINC Program)	1992년부터 신규이민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언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이민자 정착, 통합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비중이 높은 사업임 - 연방정부가 재원을 대고 주정부나 교육기관 등이 프로그램을 실시함.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민자들이 캐나다 공용어인 영어나 불어를 빨리 익혀 조속히 캐나다의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 프로그램 신청자격은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인정하는 학령기를 넘어선 성인(온타리오 주의 경우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나 난민, 영주권 심사중인 사람, 또는 시민권과 이민부에서 발행하는 이 프로그램 신청자격 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한함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 (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ISAP)	-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재원을 제공하여 이민자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리셉션, 오리엔테이션, 통번역, 지역자원에의 연계, 해결중심의 카운슬링, 생활정보와 취업정보 제공 등 직접적 서비스와 함께, 워크숍, 리서치 프로젝트, 스텝 교육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접적 서비스도 포함
호스트 프로그램 (HOST)	- 캐나다 문화에 익숙한 자원봉사자가 신규 이민자에게 도우미 역할을 하여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취업을 위한 인맥형성이나 지역사회공동체에의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주: 캐나다 시민권과 이민부 홈페이지(www.cic.gc.ca)

다. 일본

일본은 한국보다 약 10년 정도 먼저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정책과 사회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일본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유입하였고,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문화정책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 언어 지원

커뮤니케이션 지원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외국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해당한다. 예컨대, 다언어 '상냥한 일본어'에 의한 정보제공의 사례를 든다면, 외국인에 대해서 다언어발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국제교류협회에서는, 공익재단법인 가나가와 국제교류재단, 요코하마시와 협동하여,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다언어정

보를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전달해야하는가에 대해서 힌트집을 2016년 3월에 작성해 공개했다. 편집방침이나 레이아웃, 디자인, 번역전의 일본어원고 쓰는 법이나 궁리해야할 점, 완성후의 정보발신방법 등에 대해서, 다언어정보의 작성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 힌트(예컨대, 표제나 중요한 문자의 크기와 색을 변경하는 것, 모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병기하는 것, 의인화된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사진에 가까운 일러스트를 이용하는 것)를 소개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증가에 의해, 지자체 창구에서의 다언어에 의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져 있는 것과 함께, 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의해, 교육이나 의료, 간호 등의 분야에서도 외국인 주민에의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본인 대응용 정보를 그대로 번역하면 외국인에도 똑같이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본의 제도나 배경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모국어로 되어있다고 해도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요코하마시 소방국, 오사카시 소방국, 사카이시(오사카부 소재) 소방국의 삼자통화에 의한 119번 통보의 다언어대응을 들 수 있다. 즉 요코하마시소방국, 오사카시소방국, 사카이시고방국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의 119번 통보에의 대응이나, 재해·구급현장에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언어로 대응하는 민간 콜센터의 통역을 개입시킨 삼자통화를 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5개 국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으로부터의 긴급요청의 현장에서, 통역을 개입시킨 것으로 상세한 증상이나 연락처 등을 청취하는 것이 가능해, 적절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은 이처럼 이민자들에게 생활 밀착형 언어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언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2) 정착 지원

일본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주, 교육, 취업, 의료·보건·복지지원을 한다. 거주지원은 주택임대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제공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과 일본인 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요소, 예를 들어 쓰레기 배출 등과 같은 지역의 규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교육지원은 외국인의 일본생활 적응을 위한 일본어교육 지원체제의 구축, 외국인 자녀들의 취학준비과정부터 입학 이후 학교에서의

생활, 그리고 상급학교로의 진로 및 취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취업지원은 외국인의 취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헬로우 워커'·상공회의소 등과의 연대를 통하여 취업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의욕이 있는 외국인이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주민의 창업을 지원한다. 의료 등은 외국어로 대응이 가능한 병원 및 약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언어로 작성된 의료문진표를 사용하여 외국인들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언어로 작성된 모자수첩의 교부 및 조산(助産)제도의 소개, 양친(兩親)학급의 개최 등 다양한 언어에 의한 정보제공과 보육에 있어서 다문화 대응을 통하여 보육을 필요로 하는 세대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라. 시사점

미국의 이주민 정책은 효율성에 기반하여 필요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이주민이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이주국가'이고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효과적인 이주민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중앙정부와 지역 사회 간의 역할분담 및 협업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캐나다도 미국처럼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주자로 구성된 '이민국가'이고 연방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보다는 연방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체성 자체를 다문화국가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포괄적인 이민자 통합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연방정부가 세세한 서비스에 개입하기보다는 다양한 민간영역,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주류 사회와 이민자 사회 등 다양한 수준과 영역 사이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 사례로는 한부모가족 비율이 높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7)]

가. 미국

2016년 미국 인구통계(Census Bureau)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한부모가족 중 모자 가정은 978만 가구이고, 203만 가구는 부자 가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자 가정은 전체 한부모가족의 약 83%에 육박하여, 여성 한부모가 미국 한부모가족의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한다. 즉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는 저소득 여성 한부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주(state)마다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상이하다.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중 절반이 넘는 복지 지원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족에게 수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한부모가족이다.

(1) 생계 지원

먼저 생계 지원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지원으로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가 있으며, 직업이 없는 한부모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Unemployment Insurance, 저소득층 한부모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등이 있다.

①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8)]

TANF는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취업을 위하여 최대 5년까지 제한된 범위에서 현금지원, 양육지원, 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직업준비 및 근로, 결혼의 촉진을 통해 복지의존도를 감소시키며, 혼외임신을 감소·예방하여 양부모가정의 형성 및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한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국에서 TANF는 각 주별로 기준, 수준, 요건

---

7) 배윤진 외.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7. 참조

8) TANF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로 한부모가족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부모가족의 대다수가 저소득 가정에 속하여 한부모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다.

등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어 TANF의 명칭을 포함하여 그 요건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을 원인으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수준과 자산기준 및 가족 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본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구 내 자녀가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준에 대한 기준은 주마다 달리한다. TANF는 개인이 지원 후 주 담당 기관 내 평가를 거쳐 수혜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수혜 범위에 들기 위해서는 가족 수, 소득, 자산, 생활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② Unemployment Insurance

한편 미국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미취업 상태의 한부모에게 최대 26주까지의 주급을 제공하는 Unemployment Insurance가 있다. 수혜자는 각 주의 법에 따라 자신의 과실로 인해 직장을 잃은 자가 아니어야 하며, 직장에 근무하던 최근 1년간(52주간)의 임금을 바탕으로 최대 수혜금액이 결정된다.

(2) 주거 및 부모 자립·교육

① Section 8 Housing Program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Section 8 Housing Program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전체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족 주택 임대료의 일정 부분 지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수혜 대상자 선정은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소득, 가구 크기, 가구 구성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연방 기금을 바탕으로 한 본 프로그램은 House Choice Voucher를 제공하여 경제적 지원을 한다.

② Federal Pell Grant

부모 자립·교육은 저소득 한부모 중 대학 수준의 교육을 지속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방 차원에서 제공 가능한 지원으로 Pell Grant가 있다. 본 지원금은 학자금 대출 형식이 아니며,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받게 되는 지원금은 경제적인 상황, 교육비, 수업을 시간제 혹은 전일제로 듣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③ 기타

이와 별도로 미국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지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 내에서 청소년 부모교육(Teenage Parenting Program), LEAP(Leaming, Earning and Parenting), 대안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아동센터(Parent Child Center)를 통해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을 장려하고, 젊은 부모에게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도록 다양한 기술 및 지식 등을 제공하며, 미숙한 부모역할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영국

영국은 이혼 및 별거의 증가, 10대의 높은 출산율 등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족정책을 강조해 온 영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급여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아동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은 최소한의 보편적 지원을 하여 빈곤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녀가 특정 연령이 되었을 때 한부모가 노동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을 원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국가가 한부모의 경제 활동을 격려하여 자립하도록 돕는 체계이다.

(1) 생계 및 자립

생계 및 자립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중에 핵심이 되는 생계 지원으로 Income Support(IS)가 있다. 소득지원급여(IS)는 주거급여와 함께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종래에는 한부모가 자녀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2008년에 이르러 정책의 변화로 인해 막내 아이의 나이가 12세 이하인 한부모로 그 지원 대상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막내 아이가 12세 이상인 한부모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2009년 10월에는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을 10세로 낮추었으며, 2010년에는 이를 더욱 하향시켜 7세 이상으로 조정하게 된다. 소득지원급여를 통해 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그만큼 미성년 자녀에 대해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취업활동을 강요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무리한 노동시장 진입이 필요 없게 된다.

Income Support(IS)는 한부모가 주당 16시간 이하를 일하거나 일자리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은행 잔고가 £16,000[9] 이하인 경우에 수여되는 소득 지원이다. 단,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제한을 두고 있다.

Income Support(IS)에서 Jobseeker's Allowance(JSA)로 전환되는 과정을 위해 한부모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것이 Lone Patent Work Focused Interviews(WFI)이다. WFI는 자녀의 연령이 1-3세일 때 일 년에 2번, 아동 연령이 4세일 때는 일 년에 4번 시행되는 교육과 훈련이다. 만일 이 교육을 패스하지 못하게 되면 현재 받는 Income(IS)의 약 20%까지 삭감될 수 있다.

한부모의 경제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또 다른 지원으로 In Work Credit(IWC)이 있다. In Work Credit(IWC)은 일을 하지 않다가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한부모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한부모가 직장에 근속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 수혜가 가능하다.

(2) 자녀양육 지원

영국의 자녀 돌봄에서 가장 큰 지원은 3세와 4세를 대상으로 하는 주당 15시간 무상보육지원이다. 1년 최대 38주 동안 부모의 근로상태와 상관없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또 다른 자녀양육 지원으로는 Working Tax Credit 혜택이 있는데, 이는 한부모가 주당 최소 16시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자녀의 보육기관 이용금의 70%를 Working Tax Credit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자녀 1명인 경우 주당 £175,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주당 £300이다.

영국의 자녀 양육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한부모가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자녀 돌봄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점이다. 특히 Working Tax Credit 지원은 주 16시간 이상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지 않은 한부모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자리를 찾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9) 1£≒한화 1,463원

또한 영국에서의 아동양육비 지원 관련 급여로 근로보조금, 아동보호프리미엄, 미망인부모수당 등이 있다. 근로보조금은 면세되는 일시금 수당으로써 한부모 가족이거나 자녀가 있는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250를 지급하고, 아동보호프리미엄은 소득보조나 소득연계 구직자 수당을 받는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최고 £10(한화 약 19,000원)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보조금의 경우 소득보조, 구직자수당, 노동능력 부재수당, 중증장애인 수당을 26주 이상 받은 자는 일주일에 16시간 노동을 시작할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미망인 부모수당은 사회보험을 납부했던 남편과 사별을 할 경우 1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일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주당 £75.5(한화 약 143,500원)가 지급되고, 남편의 기여 경력에 따라 자녀 1인당 £9.65(한화 약 18,300원)에서 £11.35(한화 약 21,600원)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 시사점

한부모가족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한부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각 주마다 지원하는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차가 큰 특징이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여 양육 부담이 줄어드는 시점에 한부모의 경제활동을 권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부모가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것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각 국가마다 한부모가족의 지원배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타 국가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국외 사례를 통해 현 시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지, 한부모 경제시장 진입과 자녀양육을 위해 우선시해야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이혼한 부모에게 공동 육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의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II 정책과제별 분석

1 정착지원 부문(다문화가족)

가. 현황

(1) 사업 현황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 부문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10]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 부문과 관련된 재정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센터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사업, 다문화 멘토링 지원사업 등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센터운영)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자조집단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이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은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또는 아동양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첫째,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하고, 둘째,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 교육서비스 제공하며, 셋째,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1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총 218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정착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조기적응에 기여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 및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고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다문화 멘토링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강화 및 기초학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을 1:1로 멘토링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정책과제 주요 내용]

세부 과제	목적 및 주요 추진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목적 ○ 지역 사회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자조모임,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 □ 도입배경 ○ 외국인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실태 파악 및 차별개선 추진을 대통령 지시과제로 관리할 것으로 지시(05.5.22) □ 사업내용 ○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발굴 및 지원 ○ 지역 내 종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 센터 상담서비스 질 제고 및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서비스 확대 추진 ○ 대외 정책 변화, 가족의 변화에 따라 시의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확대 □ 2019년 예산안: 384억원

세부 과제	목적 및 주요 추진 내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	□ 목적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에게 자녀생활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도입배경 ○ 농림부(한국어교육), 여가부(아동양육지원) 분리 실시('07년), 여가부 사업으로 통합 추진('08년-), 본인부담금 적용 시범사업 추진('14년-) □ 사업내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서비스 제공 □ 2019년 예산안: 168억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 목적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한국사회 조기 적응에 기여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센터 당 언어권별로 1-4명의 통·번역 전문인력 파견을 통해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 2019년 예산안: 47억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 발달지원서비스 사업	□ 목적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도입배경 ○ 결혼이민자와 더불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한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 2019년 예산안: 67억원

세부 과제	목적 및 주요 추진 내용
다문화 멘토링지원사업	□ 목적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강화 및 기초학력 강화 □ 도입배경 ○ 2006년 5월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녀까지 확대하여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계획으로 발표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1:1 멘토링 실시 ○ 농촌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온라인 멘토링시스템 도입 □ 2019년 예산안: 68억원

자료: 여성가족부

(2) 예산 현황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 부문의 2019년도 예산안은 734억원으로 전년대비 98억원(15.5%) 증가되었다.

사업별로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센터 운영)은 2017년 말 기준 218개소[11]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384억원으로 전년대비 82억원(27.3%)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168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1.8%)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47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11.8%) 증가하였다. 다문화 멘토링 지원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였다.

11) 2017년 12월 기준(단위: 개소수)

유형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8	24	9	7	9	4	5	5	1	31	18	12	15	14	21	23	19	2

[2019년도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부문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2018		2019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센터운영)	28,179	30,142	30,142	38,379	8,237	27.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사업	15,667	16,480	16,480	16,777	297	1.8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	4,069	4,246	4,246	4,748	502	11.8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5,855	5,914	5,914	6,698	784	13.3
다문화 멘토링 지원사업	6,039	6,750	6,750	6,750	0	0
합 계	59,809	63,532	63,532	73,352	9,820	15.5

자료: 여성가족부

중기 재정투입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부문 관련 예산은 2015년 586억원에서 2019년 734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 719억원에서 2022년 809억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개별 사업별로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센터 운영) 예산은 2015년 268억원에서 2022년까지 429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5년 161억원에서 2018년 16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168억원에서 2022년 175억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부문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센터운영)	26,763	27,450	28,226	30,142	38,379	37,962	40,359	42,93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16,104	16,104	16,104	16,480	16,777	15,912	16,710	17,507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	3,185	3,281	3,732	4,246	4,748	5,144	5,885	6,626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5,783	5,783	5,783	5,914	6,698	6,112	6,597	7,083
다문화 멘토링 지원사업	6,750	6,750	6,750	6,750	6,750	6,750	6,750	6,750
합 계	58,585	59,368	60,595	63,532	73,352	71,880	76,301	80,896

주: 2015~2018년은 예산 기준이며, 2019년은 예산안, 2020~2022년은 중기재정계획 상 투자계획임
자료: 여성가족부

나. 분석 의견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공급 개선방안 마련 필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중도퇴사 인력에 비해 신규 양성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교육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집을 방문하여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개요]

구 분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한국어교육
※ 사업개요: 방문교육지도사가 주 2회 방문, 회당 2시간씩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만 24세 이하)
지원내용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아동기) 자녀의 양육관련 교육·정보 제공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알림장 읽어주기, 숙제지도 등)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지원기간	1회(5개월)/생애주기별 (3회, 최대 15개월)	1회(10개월)	1회(10개월)
본인부담금	무상	본인부담금* 적용	무상

*자녀생활 서비스 본인부담금

유형	소득기준	단가(원/시간)		4주 기준 (8회, 16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금	
가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2,500원	무상	무상
나형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11,500원	1,000원	16,000원
다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1,000원	1,500원	24,000원
라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0,500원	2,000원	32,000원

자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201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168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1.8%) 증가하였다.

[2019년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2018		2019	증감	
	결산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사업	15,667	16,480	16,480	16,777	297	1.8

자료: 여성가족부

2014~2017년간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4.0%에 해당하는 6억 4,900만원, 2016년도에는 6.1%에 해당하는 9억 8,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17년도에도 5.8%에 해당하는 9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최근 4년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A)	실집행액(B)	불용액(C=B-A)	불용률(C/A)
2014	21,179	센터기본사업에 포함	-	-
2015	16,104	15,455	649	4.0
2016	16,104	15,119	985	6.1
2017	16,104	15,169	935	5.8

주: 불용액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로 교부하지 않은 미교부액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최근 7년간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의 운영실적을 보면, 방문교육지도사 수는 2011년 3,635명에서 2017년 1,864명으로 48.7% 감소하였고, 지원가구수는 2011년 23,547가구에서 2017년 15,413가구로 34.5%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방문교육지도사 1명이 담당하는 다문화가족 수는 2011년 6.5가구에서 2017년 8.4가구로 증가하였다.

[최근 7년간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운영실적]

(단위: 명, 가구)

구 분	계			한국어교육		가족생활		
	방문교육 지도사	수혜자	지도사1인당 가구수	방문교육 지도사	수혜자	방문교육 지도사	수혜자	
							부모 교육	자녀 생활
2011	3,635	23,547	6.5	1,787	10,864	1,848	8,398	4,285
2012	2,961	20,325	6.9	1,546	10,140	1,415	6,464	3,721
2013	2,918	20,407	7.0	1,453	9,841	1,465	6,220	4,346
2014	2,336	18,651	8.0	1,188	8,627	1,148	5,375	4,649
2015	2,062	16,571	8.0	1,007	6,594	1,055	5,266	4,711
2016	1,931	15,660	8.1	957	5,509	974	5,081	5,070
2017	1,864	15,413	8.4	897	5,041	967	4,865	5,507

자료: 여성가족부

방문교육지도사 수가 매년 감소한 것은 방문교육지도사 중 중도퇴사 인력에 비해 신규 양성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문교육지도사 중 중도퇴사 인원은 2014년 181명, 2015년 91명, 2016년 114명, 2017년 89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양성교육인원은 2014년도에는 없었으며, 2015년 137명, 2016년 46명, 2017년 5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2개년 동안 평균 양성 인원은 50.5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평균 퇴사인원은 101.5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5년간 방문교육지도사 중도 퇴사 현황]

(단위: 명, %)

구 분	재 직	중도퇴사	퇴사율	양성교육인원
2014	2,336	181	7.75	-
2015	2,062	91	4.41	137
2016	1,931	114	5.90	46
2017	1,864	89	4.77	55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2018년 방문교육지도사 현황을 보면 2018년 방문교육지도사의 예산상 배정인원은 2,024명이었으나, 2018년 8월말 현재 실제 활동하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는 1,803명으로 예산배정인원 대비 221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단위: 명)

2018년 예산배정 인원			실제 활동 인원(2018.8월말 기준)		
합 계	한국어	가족생활	합 계	한국어	가족생활
2,024	790	1,234	1,803	794	1,009

자료: 여성가족부

2017년 방문교육 수혜자 수는 앞에서 본 '최근 7년간 방문교육서비스 운영실적'에서 제시한 것처럼 15,413명이며, 2017년 집행액 또한 앞에서 본 '최근 3년간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집행내역'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5년에 6억 4,900만원, 2016년에 9억 8,500만원, 2017년에 9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한편, 방문교육지도사 수가 감소함에 따라 방문교육서비스 대기인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12], 2014년 7,712명이었던 대기인원 수가 2015년 7,864명, 2016년 8,492명, 2017년 8,307명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4년간 방문교육서비스 대기인원 수]

(단위: 명)

연 도	대기인원 수(매년 11월 기준)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	계
2014	1,981	1,980	3,751	7,712
2015	1,818	2,048	3,998	7,864
2016	2,012	2,016	4,464	8,492
2017	1,857	1,671	4,779	8,307

자료: 여성가족부

현재 초등학생 다문화 자녀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도 2012년 이후로 10만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자녀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 대기 적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12) 여성가족부는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11월말에 다음연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연령별 다문화 자녀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초등학생	18,691	28,922	30,587	37,590	40,235	45,156	49,929	56,108	56,768
미취학아동	33,140	64,040	75,776	93,537	104,694	116,696	121,310	117,877	113,556

주: 미취학아동은 6세 이하의 아동. 초등학생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함
자료: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여성가족부는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제한적인 방문교육지도사 양성으로 방문교육서비스의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지적된 방문교육서비스의 대기인원 수 증가는 물론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 불용액 등을 방지하고 서비스 공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규 양성 인원을 확대하여 방문교육서비스 대기인원 적체를 해소하는 등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 멘토링 서비스 형평성 제고 필요

정부는 다문화 멘토링 서비스가 도·농간 형평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멘토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율은 2013년 0.86%에서 2018년 2.19%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학생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은 2014년 67,806명, 2015년 82,536명, 2016년 99,186명, 2017년 109,387명, 2018년 122,21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학업성취, 언어발달, 자아정체감 형성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학생 현황[1]]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다문화 학생	국내출생[2]	45,814	57,498	68,099	79,134	89,314	98,263
	중도입국[3]	4,922	5,602	6,261	7,418	7,792	8,320
	외국인[4]	5,044	4,706	8,176	12,634	12,281	15,629
	계(A)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전체학생(B)		6,489,349	6,294,148	6,097,297	5,890,949	5,733,132	5,592,792
다문화학생 비율(A/B)		0.86%	1.08%	1.35%	1.68%	1.91%	2.19%

주: 1. 각 연도 4월1일 기준
2.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내출생과 동시에 한국국민이 됨)
3.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
4.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자료: 교육부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09년부터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대학생의 다문화인식 제고 등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다문화 멘토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 87개 대학에서 대학생 3,822명의 멘토를 선정하여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교과학습, 학교생활진로상담,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13]

[2019년도 다문화 멘토링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다문화 멘토링 지원사업	6,039	6,750	6,750	6,750	0	0

자료: 여성가족부

13)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보다 현장 중심의 대응성이 좋으므로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다문화 멘토링 지원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년 7월
사업예산(백만원)		13,500	6,750	6,750	6,750	6,750
대학생 (멘토)(명)	다문화	6,482	4,318	4,326	4,089	3,698
참여대학(교)		82	76	91	90	87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다문화 멘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어촌 등 멘토링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매칭된 멘토링 비중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다문화 멘토링 사업에 선정된 전체 지역 다문화학생 중 농어촌 지역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2014년 기준 1,573명에서 2017년에 887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도별 다문화 멘토링 지원사업의 지역구분별 멘토링 매칭 비중]

(단위: 명, %)

구분	멘토링에 선정된 다문화 학생 수(비율)	멘토링에 선정된 농어촌 지역 다문화 학생 수(비율)	멘토링에 선정된 도시 지역 다문화 학생 수(비율)
2014	7,257(100)	1,573(21.7)	5,684(78.3)
2015	5,228(100)	1,135(21.7)	4,093(78.3)
2016	5,162(100)	923(17.9)	4,239(82.1)
2017	4,899(100)	887(18.1)	4,012(81.9)

자료: 감사원,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실태」, 2018.

한편 광역시에 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 지역을 대상으로 관내 시·군에 참여대학 소재 유무에 따른 다문화 멘토링 매칭률을 보면 2017년의 매칭률이 참여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69.0%인 반면, 참여대학이 없는 자치단체는 45.1%로 그 격차는 23.9%p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32.3%p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다문화 멘토링 지원사업의 지역구분별 멘토링 매칭률]

(단위: 명, %)

구분	참여대학이 없는 시·군			참여대학이 있는 시·군			참여대학 유무에 따른 매칭률 격차
	신청 다문화학생	매칭 다문화학생	매칭률	신청 다문화학생	매칭 다문화학생	매칭률	
2014	2,135	1,185	55.5	3,281	2,640	80.5	25.0
2015	1,812	836	46.1	2,727	2,003	73.5	27.4
2016	1,842	672	36.5	3,098	2,132	68.8	32.3
2017	1,270	573	45.1	2,717	1,875	69.0	23.9
합계	7,059	3,226	46.3	11,823	8,650	73.2	26.9

자료: 감사원,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실태」, 2018.

농어촌 등 지역에 사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멘토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까지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멘토링 시간당 단가를 도시는 12,500원 농어촌은 14,500원으로 2,000원 높게 운영하다가 2015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시간 당 단가를 500원 인상하여 15,000원으로 하였지만 여전히 도·농간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다문화 멘토링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도·농간 형평성 있는 멘토링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보다 적실성 있는 대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법적 근거 명확화[14)]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통합센터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달체계의 점차적 통합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원스톱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억 3,700만원(27.3%) 증가한 383억 7,900만원이다.

14)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여성가족위원회 소관」, 2018.10., pp.226~228.

[2019년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66,918	70,908	70,908	85,058	14,150	20.0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8,179	30,142	30,142	38,379	8,237	27.3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 확대 제공하고 접근성을 강화하여 취약가족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기존의 건강가정센터(151개소)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218개소)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해 왔고, 2019년 예산안에도 통합센터 206개소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다(2018년 152개소).

[연도별 센터 개소수 추이]

(단위: 개소)

구분	2016	2017	2018	2019(안)
통합센터	78	101	152	206
건강가족 지원센터	83 (국비 50, 지방 33)	66 (국비 39, 지방 27)	35 (국비 23, 지방 12)	24 (국비 15, 지방 9)
다문화 가족센터	141 (국비 137, 지방 4)	118 (국비 115, 지방 3)	74 (국비 72, 지방 2)	21 (국비 20, 지방 1)

주 1. 단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지방비센터) 추가 설치(2018년 총 218개소)
2. 국비는 국비지원 센터를 의미하고, 지방은 지방비로 설치된 센터(국비지원 없음)를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두 유형을 융합한 통합센터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15)16)]

[건가·다가·통합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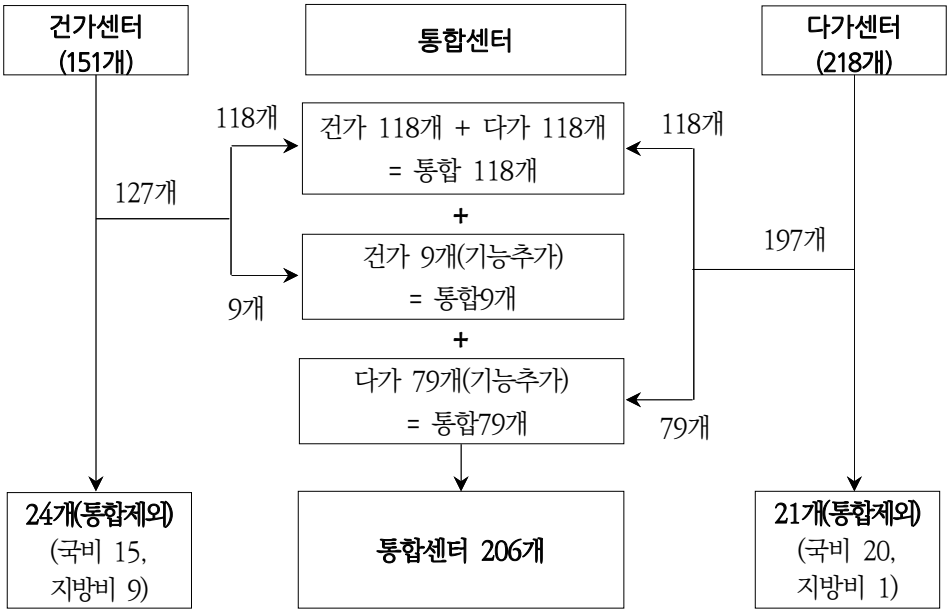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향후 통합센터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③ 생 략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보육지원 부문(한부모가족)

가. 현황

(1) 사업 현황

한부모가족의 보육지원 부문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부모가족 보육지원 부문과 관련된 재정사업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사업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이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제12조의3[17]등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의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규모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81,000여 세대이다('17년말 기준).

또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의2, 제17조의4[18]등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가정

---

1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4.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미혼모 심리·정서 상담, 의료 및 양육용품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규모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3,600여 세대이다(17년 말 기준). 한부모가족 보육지원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4.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보육지원 정책과제 주요 내용]

세부 과제	목적 및 주요 추진 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 목적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의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도입배경 ○ 한부모가족은 빈곤율이 높고, 사회적 부정적 인식 때문에 자녀 양육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적 책무로서 안정적인 지원이 요구 □ 사업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근거하여 복지 급여를 실시 ○ 1992년부터 현재까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규모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81,000여 세대에 달함('17년말 기준) ○ 연차적으로 아동양육비 단가 월 20만원까지 인상,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 2019년 예산안: 2,046억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	□ 목적 ○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도입배경 ○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가사 부담 외에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을 느끼므로 자녀 양육환경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성 ○ 누가 낳았건 어떤 이유로 낳았건 간에 낳은 아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건강한 인간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함('05년 여성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 □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의2, 제17조의4에 근거하여 복지 급여를 실시 ○ '10년부터 현재까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규모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3,600여 세대(17년 말 기준), 미혼모부자에 해당함. ○ 연차적으로 아동양육비 단가는 35만원까지 인상할 계획 □ 2019년 예산안: 47억원

자료: 여성가족부

(2) 예산 현황

한부모가족 보육지원 부문의 2019년도 예산안은 2,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3억원(124.3%) 증가되었다.

사업별로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2,046억원으로 전년대비 1,152억원(128.8%) 증가하였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19년에 47억원으로 전년대비 21억원(84.7%) 증가하였다.

[2019년도 한부모가족 보육지원 부문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사업	87,058	89,393	89,393	204,558	115,165	128.8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	2,017	2,530	2,530	4,674	2,144	84.7
계	89,075	91,923	91,923	209,232	117,309	127.6

자료: 여성가족부

중기 재정투입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보육지원 부문 관련 예산은 2015년 747억에서 2018년 91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도 예산안은 2,09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개별 사업별로 보면,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 724억원에서 2018년 894억원, 2019년에 2,046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046억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 예산은 2016년 20억원에서 2018년 25억원, 2022년 47억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한부모가족 보육지원 부문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사업	72,442	66,960	87,058	89,393	204,558	204,558	204,558	204,558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	2,303	1,970	2,017	2,530	4,674	4,674	4,924	4,674
합계	74,745	68,930	89,075	91,923	209,232	209,232	209,482	209,232

주: 2015~2018년은 예산 기준이며, 2019년은 예산안, 2020~2022년은 중기재정계획 상 투자계획임
자료: 여성가족부

나. 분석 의견[19)]

(1)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의 정확도 제고

첫째,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2,046억원으로 전년대비 1,152억원(128.8%) 증가하였다.

[2019년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사업	87,058	89,393	89,393	204,558	115,165	128.8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아동양육비는 2018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고, 2019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매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양육비는 2010~2016년까지 자녀 연령이 12세 미만으로 유지되다가 2017년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2018년 14세 미만, 2019년 18세 미만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19)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여성가족위원회 소관」, 2018.10., pp.211~220.

아동양육비 월 지급단가는 2010년 월 5만원에서 2013년 7만원, 2015년 10만원, 2017년 12만원, 2018년 13만원에서 2019년 2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2019년 20만원은 전년 대비 7만원(53.8%) 증가하여 2010년 이후 그 증가액이 가장 크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2010	2013	2015	2017	2018	2019(안)
월 단가	5	7	10	12	13	20
연령기준	12세 미만			13세미만	14세미만	18세미만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동 사업의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지원대상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동 사업은 2015~2017년 자치단체 실집행잔액이 2015년 예산액 669억 6,000만원의 6.7%인 45억 700만원, 2016년 예산액 669억 6,000만원의 9.6%인 64억 1,300만원, 2017년 예산액 870억 5,800만원의 4.5%인 39억 1,100만원으로 나타나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2018년에는 7월 기준으로 시·도별 집행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10월 지급분부터 아동양육비 부족이 예상되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100억 6,9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인원 및 예·결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안)
예산 인원	75,000	75,000	81,260	75,825	112,767
결산 인원	67,872	65,023	75,019	80,957[1)]	-
예산액(A)	66,960	66,960	87,058	89,393	204,558
실집행금액(B)	62,453	60,547	83,147	-	-
실집행잔액 (C=A-B)	4,507	6,413	3,911	-	-
실집행률(B/A)	93.3	90.4	95.5	-	-

주: 1) 1~7월 결산 인원(평균)이 80,957명으로 예산 인원을 초과하여 575억 4,700만원(64.3%)을 집행함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15~2017년 불용액 발생에 대해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한부모 가족 당사자가 본인이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과정에서 예측보다 아동양육비 신청이 저조할 수 있고 경기 상황 등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어려운 점 등 다양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예산 부족분이 발생한 2018년도에는 지원 연령 상향 및 단가 인상에 따른 홍보 효과로 신규신청자가 증가하였으며, 경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탈수급가구의 수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되지 못하여 2015~2017년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다가 2018년도에는 100억원 이상 부족분이 발생하는 등 예결산 금액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2019년도에는 양육비 지급 대상아동 연령 및 단가가 모두 확대됨에 따라 예산 집행을 예측하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여성가족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상황 변동, 단가 및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통해 예산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예산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은 연령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출생자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유사 급여사업[20]과 동일하게 기준 연령이 되는 월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고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의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의 연령기준과 해당 기준의 상세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018년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의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출생자는 2018년도에 각자 생일이 지나면 만 14세가 된다. 따라서 2018년도 대상자들이 12월말까지 지원을 받는 동안 해당 연도 중에 생일을 지나고 나면 만 14세가 되어 14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에 사실상 부합하지 않게 된다.

---

20)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0~5세 미만(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하고 있고, 다른 급여사업들도 출생 월(만 나이)을 기준으로 수급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8년도 기준 한부모가족지원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 연령 기준 현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연령 기준	연령 기준 상세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아동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아동양육비	만 14세 미만 아동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한부모가족 기준연령	만 25세 이상 한부모	199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기준 연령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자료: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 고시)」

이러한 대상인원 산출 방식의 문제점은 아동양육비의 경우 출생아동의 생일을 시점으로 지급대상자가 되는 반면, 종료 시점은 출생아동의 생일과 무관하게 특정 연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같은 해 출생아동이 수급시점이 동일하게 종료되어 급여수급 기간의 출생월에 따라 최대 11개월 차이[21]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수당 지급 사업의 경우 0~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최대 72개월 지급하도록 하여 출생월에 따라 수급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대상 연령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하여 수급인원 간 수급기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사업의 운영 개선 필요

첫째, 여성가족부는 자치단체 실집행률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22]은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등을 통해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1억 4,400만원(84.7%)이 증액된 46억 7,400만원이다.

21) 1월생과 12월생의 경우, 1월생은 해당 연령이 되고 나서도 12월까지 수급기간을 유지함에 따른 11개월의 추가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12월생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22) 코드: 양성평등기금 2132-431

[2019년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017	2,530	2,530	4,674	2,144	84.7
아동양육비	1,308	1,356	1,356	3,146	1,790	132.0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423	423	423	427	4	0.9
인식개선홍보	51	51	51	551	500	980.4
연구개발	0	0	0	100	100	순증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아동양육비는 2018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23)]

아동양육비 월 지급단가는 2010년 월 10만원에서 2011년 15만원, 2017년 17만원, 2018년 18만원에서 2019년 35만원으로 증액되었다. 2019년 예산안에 따른 35만원은 전년 대비 17만원(94.4%) 증가하여 2010년 이후 그 증가액이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

(단위: 만원)

구분	2010	2011	2017	2018	2019(안)
월 단가	10	15	17	18	35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15년 예산액 12억 1,100만원의 16.2%인 1억 9,600만원, 2016년 예산액 12억 1,100만원의 12.2%인 1억 4,800만원, 2017년 예산액 13억 800만원의 11.8%인 1억 5,400만원이 실집행잔액으로, 자치단체에서 불용되는 금액이 예산액의 11.8%~16.2% 수준으로 나타났다.

23) 이는 사업의 복지급여(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급기준이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 고시)」).

[2015~2017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인원 및 예·결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2015	2016	2017
예산 인원	2,200	2,200	2,200
결산 인원	2,159	2,221	3,466
예산액(A)	1,211	1,211	1,308
실집행금액(B)	1,015	1,063	1,154
실집행잔액(A-B)	196	148	154
실집행불용률(A-B)/A	16.2	12.2	11.8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예산편성 인원(2,200명) 대비 결산 인원은 자치단체의 실집행불용률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

2015년 2,159명, 2016년 2,221명, 2017년 3,466명으로, 2015년과 2016년은 예산편성 인원과 결산 인원이 비슷하였으나, 2017년은 예산편성 인원 2,200명 대비 결산 인원이 50% 이상 급증하였는데도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았고, 11.8%의 실집행불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만 2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지원 대상 자체가 적고, 인원 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수급 인원의 연령 현황 등이 제대로 관리될 경우 신규 유입인원 및 연령제한(만 24세 이하까지 수급)으로 인한 수급 중지 인원이 비슷할 것이라는 점에서 수급인원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향후 2017년 수급인원 급증 및 2015~2017년 연례적 실집행률 저조 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특히 2019년은 지원단가가 2배 가량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역사업인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사업에서 집행하는 출산·양육 의료비의 경우 거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미혼모·부자의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구조 및 전달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예산은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5,000만원씩 전국 17개소에 대해 총 4억 2,7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국고보조율은 50%이다. 2019년에는 개소당 1명씩 17개소에 대한 인건비 2억 1,400만원 및 사업비 1억 8,100만원 등이 편성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이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 출산·양육 의료비 지원, 친자검사비, 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2018~2019년도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예산 비교]

합계	2018 예산	2019 예산안
	423백만원	427백만원
인건비	210백만원(17개소, 17명)	214백만원(4백만원 증) ※ 종사자 처우개선 1.8% 반영
운영비	32백만원(17개소)	32백만원(전년 동)
사업비	181백만원(17개소)	181백만원(전년 동)

자료: 여성가족부

이 중 '출산·양육 의료비'는 만 3세 이하 자녀 양육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되며, 2017년 거점기관에 편성된 사업비(국비 및 지방비) 3억 6,200만원의 77.6%이 2억 8,076만원이 집행되는 등 가장 집행액이 큰 사업이다. 그런데 2017년 기준 전체 미혼모부 30,489명 중 거점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3.9%인 1,198명에 불과하고, 출산·양육 의료비 지원대상은 2017년 기준 590명에 불과하다.[24)]

24) 거점기관 출산·양육 의료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미혼모부이기는 하지만, 이용대상 가구는 미혼모부 전체가구인점을 고려할 때, 이용비율이 저조하다.

[2015~2017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사업별 이용현황]

구분	출산·양육 의료비	친자 검사비	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역연계 서비스
2015	475명	13건	863명	586명	452명	942명
2016	560명	19건	891명	530명	422명	880명
2017	590명	14건	910명	607명	378명	914명

자료: 여성가족부

이와 관련하여, 거점기관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설립되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거주지역이 거점기관의 주변이거나 이동이 용이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출산·양육 의료비 지원 사업 세부내용]

· 지원대상: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병원비 및 양육용품(분유, 기저귀, 유모차 등)
  – 병원비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액 : **가구당 연간 70만원 이하 지원**
  – 양육용품의 경우 1회 10만원 이하 지원, 12개월 이하 자녀 연 30만원 추가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각 센터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상자별 차등지원 가능
· 지급방법 : 병원비는 의료기관에, 양육용품은 구입 대상처에 계좌입금 등
· 예산 집행기준: 예산 집행시 출산 및 양육 의료비를 최우선으로 지원(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은 예산이 남을 경우 추가 운영)

자료: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사업안내」

따라서 향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교육, 문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미혼모·부자의 교류활동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양육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편의지원 부문(한부모가족)

가. 현황

(1) 사업 현황

한부모가족의 편의지원 부문과 관련된 재정사업은 양육비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사업이다.

양육비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사업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5] 제7조에 근거하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 조사정보, 양육비이행개선, 양육비 상담·신청, 양육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편의지원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 편의지원 정책과제 주요 내용]

세부 과제	목적 및 주요 추진 내용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목적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 □ 도입배경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15.3.25) □ 사업내용 ○ 법률지원 서비스 ○ 조사정보 서비스 ○ 양육비이행개선 서비스 ○ 양육비 상담·신청서비스 ○ 양육지원 서비스 □ 2019년 예산안: 39억원

자료: 여성가족부

25)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해 2014년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급하게 양육비가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해주거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2) 예산 현황

한부모가족의 편의 지원 부문의 사업인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39억원으로 전년대비 1.5억원(4.1%) 증가되었다.

[2019년도 한부모가족 편의지원 부문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3,975	3,734	3,734	3,886	152	4.1
합 계	3,975	3,734	3,734	3,886	152	4.1

자료: 여성가족부

중기 재정투입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편의지원 부문 관련 예산은 2015년 45억원에서 2019년 39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 51억원에서 2022년 61억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한부모가족 편의지원 부문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4,544	4,344	3,975	3,734	3,886	5,064	5,571	6,128
합 계	4,544	4,344	3,975	3,734	3,886	5,064	5,571	6,128

주: 2015~2018년은 예산 기준이며, 2019년은 예산안, 2020~2022년은 중기재정계획 상 투자계획임
자료: 여성가족부

나. 분석 의견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성이 저조하므로 정부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 된 이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5.7%에 해당하였다.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48.3%,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도 22.8%였다. 201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2년에는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4.4%였는데, 2015년에는 22.8%로 감소하였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25.7%로 증가하였다.

[한부모가 된 후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 경험 응답률]

(단위: %)

구분	현재 지원받고 있음	현재 지원받지 않으나 받은 적 있음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음	제도를 알지 못함
2012	17.3	5.1	43.2	34.4
2015	25.7	3.1	48.3	22.8

자료: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5.

한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부모 관련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불편했던 점에 대한 조사 결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어려움이 30.5%로 가장 많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음이 27.3%로 뒤를 이었으며,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함 등과 같은 응답도 18.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이용시 불편]

(단위: %)

구분	정보 접근성	행정서류 과다	반복적 설명	사적인 정보 공개	담당자의 무지	이용 시간	기타
2012	41.7	22.7	14.4	13.1	1.5	2.6	3.9
2015	30.5	27.3	18.2	14.1	4.7	4.3	1.0

자료: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5.

앞서 살펴본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지원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업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집 필

총 괄 | 이승재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박혜진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은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최정열 예산분석관
김려진 예산분석관

지 원 | 양희열 행정실무원
정희영 자료분석지원요원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Ⅳ
【 다문화 · 한부모가족 】

발간일	2018년 11월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주)명문기획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144-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